

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촬영지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영상산업 육성 시책수립 (안 제3조)
- 영상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4조)
- 영상위원회 구성 (안 제5조)
-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(안 제10조)
- 특화사업의 추진 (안 제11조)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고,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려는 데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

○ 안 제3조에서는,

-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,
-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,
-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의 추진 및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함.

○ 안 제4조에서는

- 충청북도영상위원회를 두어,
- 영상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도록 함.

○ 안 제10조에서는

-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과 시·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금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도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고 영상 시설 및 영상물 촬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,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제공할 충청북도영상위원회를 설치하고, 도지사의 행·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, ‘영상산업’ 및 ‘제작 및 촬영’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,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므로 수정·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○ 제2조제2호에서 영상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함(안 제2조제2호)

－ “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”

⇒ “다음 각 목의”

－ “가. 영화와 관련된 산업”

⇒ “가. 영화”

－ “나. 음반·비디오물·게임물과 관련된 산업”

⇒ “나. 음반·비디오물·게임물”

－ “다.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”

⇒ “다.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”

－ “라. 예술성·창의성·오락성·여가성·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”

⇒ 삭제

○ 제2조제3호에서 “제작 및 촬영”에 대한 간결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(안 제2조제3호)

－ “영상물의 제작과 촬영,”

⇒ 삭제

－ “직접 또는 간접적으로”

⇒ 삭제

또한, 조례안 제3조의 제목이 조항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○ 내용과 일치를 위한 제목의 수정(안 제3조)

－ 영상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

⇒ 영상산업 육성 사업

또한, 장황한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
붙임 :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1부. 끝.